

---

# '21년도 로봇부품 실증사업

- Q&A -

---

2021. 2.

◆ 아래 Q&A는 일반적인 예상 질문에 대한 예시 답변이며, 주요 확인 사항에 대해서는 「로봇부품 실증사업」 담당 류지호 수석(053-210-9662)에게 반드시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사업 및 사업신청 관련 Q&A

**Q1-1. 로봇부품 실증사업에 제품검증형과 현장실증형 지원분야가 있는데, 한 개의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1-1. 지원분야별로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분야별로 과제의 목적,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역할 등을 고려해서서 적합한 분야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① (제품검증형 과제) 국내 “로봇부품 제조기업”과 국·내외 “로봇 제조기업” 또는 “로봇 수요기업” 등이 협력하여 로봇부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및 로봇부품이 탑재된 로봇을 실증하는 과제이므로 “주관기관”이 과제 신청, 선정 평가, 협약, 민간 현금매칭, 이행보증보험 제출, 중간점검, 결과평가, 정산 등 전반적인 과제 추진(이하 “사업관리”)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② (현장실증형 과제) 국내·외 “로봇제조 제조기업”과 로봇부품 제조기업이 협력하되 주관기관이 주도적으로 국산 로봇부품을 탑재 실증하고 로봇 실수요처 현장에도 적용 실증하는 과제이므로 “주관기관”이 주도적으로 사업관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A”라는 로봇부품 제조기업이 제품검증형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로봇부품을 탑재한 로봇을 실증하고, 동시에 현장실증형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신청하여 로봇제조기업의 로봇부품 실증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로봇부품 제조기업(공급기업)과 로봇 제조기업(수요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고 동일한 로봇부품을 동일한 수요처에 적용하는 과제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바꾸어 동시에 제품검증형과 현장실증형에 지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1-2. '19년 이전 부천산업진흥원(舊 부천산업진흥재단)이 총괄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여 추진하였던 "시장창출형 로봇부품보급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나 '20년 진흥원에서 추진하였던 "로봇부품 실증사업"에 참여하였던 기업은 '21년도 사업에 참여 가능한가요?**

A1-2. 참여 가능합니다.

동일 기업이 과거 참여했던 사업과 달리 다른 로봇부품 또는 부품 수요처 등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이거나, 로봇부품은 동일하지만 부품 수요처가 해외 등으로 다른 경우 등 사례는 다양할 수 있어 최종 선정 여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다만, 과거 참여했던 로봇부품과 부품 수요처 및 로봇 실 적용처 등이 동일하여 기존 과제의 내용과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1-3. 신생기업도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가요?**

A1-3. 참여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공고문의 지원 대상 제외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생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최근 3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설립일로부터 과제 신청일까지의 재무제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Q1-4. 기업의 참여 없이 연구기관 등으로만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가요?**

A1-4. 불가능합니다.

연구기관 등 기관만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지원할 수 없으며 반드시 컨소시엄 내 로봇부품을 공급할 기업(로봇부품제조기업)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며, 로봇 제조기업 또는 로봇 실수요처 기업 등도 사업 내용에 따라 포함할 수 있습니다.

**Q1-5. 해외기업도 참여가 가능한지요?**

A1-5. 해외 로봇제조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공고문 상의 제출 서류를 제출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정산 등의 문제로 직접적인 사업비 편성(집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로봇 수요기업이 해외 로봇제품에 국산 로봇부품을 탑재한 실증을 요청하는 과제에 한해서 국내 로봇부품사에서 해외 로봇제조기업의 로봇 제품을 구매하여 실증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 사업 협약 시 사업계획서상에 해당내용 반영 필수

**Q1-6. 올해는 몇 개 컨소시엄을 지원할 예정이며, 과제 당 예산은 어느 정도 신청해야 하나요?**

A1-6. 별도 목표 지원 과제 수는 없으며, 과제별 지원 예산 규모는 신청 과제의 사업 내용에 따라 조정할 예정입니다.

총 국비 지원규모 내에서 신청과제 별로 사업규모, 민간매칭의 부담 등을 고려하셔서 적절한 예산규모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1-7. 로봇부품 실증을 위해 로봇부품을 탑재한 로봇을 해외에 위치한 현장에서 설치하여 로봇을 실증할 수 있나요?**

A1-7. 가능합니다.

단, 사업계획서에 해외 사업장에서 현장 실증하는 사업 내용을 작성 하셔서 평가위원회에서 승인의 절차를 거친 확정된 과제에 한해 허용합니다.

**Q1-8. 컨소시엄 구성시 로봇부품 제조기업을 꼭 포함하여야 하나요?**

A1-7. 로봇부품 실증사업의 취지에 맞추어 컨소시엄 구성시 로봇부품 제조 기업은 직접 참여는 필수이나, 과제 추진 내용에 따라 로봇 제조 기업과 로봇 실수요처의 직접 참여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함 (컨소시엄 내 복수의 로봇부품 제조기업 또는 로봇 제조기업의 직접 참여도 가능)

**Q1-9. 사업계획서 양식에서 “수요처 요구사항 분석 명확성”과 관련에서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A1-7. 로봇부품 실증을 위해서는 로봇부품 또는 로봇 제품의 개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로봇 제조사의 요구사항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과제 협약 후 수행기간 중 개량 등의 과정을 신속히,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해당 내용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로봇 제조기업의 요구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맞추기 위해 수행기간 중 해야 할 실증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2. 사업비 관련 Q&A

**Q2-1. 과제에 선정되면 국비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2-1.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 심의를 통해 지원 사업비가 결정됩니다. 국비는 선정된 컨소시엄에서 국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보증기간 : 사업기간+2개월)을 발급받아 진흥원에 제출하고 민간부담금 매칭을 완료한 것이 확인된 후에 지급합니다.

\* 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은 사업비 내 편성 가능하며, 주관기관에서 최종 협약 이후 이행보증보험 증권 미제출시에는 과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Q2-2. 민간부담은 현물 편성은 불가능한가요?**

A2-2. 아니요. 현물매칭은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편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간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매칭을 포함하여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민간부담하셔야 합니다.(현물매칭을 하지 않고 민간 현금매칭 30% 이상을 부담하여도 됩니다.)

※ 대기업이 (총괄)주관기관일 경우 민간 현금매칭은 40% 이상, 민간 현물매칭은 10% 이내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민간 현물 매칭은 테스트용 로봇 등에 한해 가능합니다. (산정기준은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내용	민간현물 매칭 예시
테스트용 로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재료를 현물로 산정할 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li> <li>▶ 장비 및 테스트용 로봇을 현물로 산정할 경우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구입하니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 만료일이 해당연도 수행기관 종료일 이후여야 함</li> </ul>

**Q2-3. 총 사업비 및 국비 지원 규모에 제한이 있나요?**

A2-3. 아니요. 제한이 없습니다.

총사업비 및 국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지원하는 컨소시엄별로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민간매칭(대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총사업비의 50% 이상)하여야 하며, 분야별 지원 예산 규모와 접수 과제에 따라 평가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Q2-4. 지방비 매칭이 가능한가요? 매칭을 할 경우 확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2-4. 네, 지방비 매칭이 가능합니다.

지방비와 민간부담금을 합하여 총사업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과제 신청시 지자체에서 발급한 지자체장 명의 지방비 매칭 협약서를 공문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Q2-5. 사업비 사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2-5.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로봇부품의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수요처 적용을 위한 목적의 예산 편성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세부 지원 사항 (예시)
<p>로봇부품 및 부분품의 제작 및 개량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봇부품의 성능검증을 위한 부품 제작 및 개량비용</li> <li>▶ 기술적 문제 해결 및 성능개선을 위한 외부전문가 기술지도 비용</li> <li>▶ 로봇부품 적용을 위한 부품 및 로봇의 개량 비용(개량에 필요한 연구장비 활용 수수료 등) 등</li> </ul>
<p>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봇부품 및 로봇부품이 탑재된 로봇 적용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비 (테스트베드 용도의 로봇 제작 및 구매비 포함)</li> <li>▶ 테스트베드 구축에 따른 운영비</li> <li>▶ 로봇 실 수요기업의 로봇 적용 부품의 테스트가 가능한 모듈제작비 등</li> </ul>
<p>품질인증 및 신뢰성 검증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봇부품 적용을 위한 성능 검증비</li> <li>▶ 신뢰성 평가를 위한 외부위탁 평가관리비 등</li> </ul>

**Q2-6. 대기업의 과제참여가 가능한가요?**

A2-6. 가능합니다.

단,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국비 지원은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되며 민간현금 40%이상을 포함하여 50%이상 민간 부담금(현금과 현물 포함)을 매칭하여야 합니다.

**Q2-7. 테스트베드 또는 실수요처에 투입될 로봇 및 로봇부품 가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2-7. 기본적인 로봇 및 로봇부품 비용은 “제조사 제안 가격”을 기초로 하되, 사업 목적과 실증사업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정 가격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시 후 평가 시 적정 가격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 (예) 일반 소매판매가격 대비 동 사업 로봇 및 로봇부품 공급가격 비교, 국내외 유사제품 대비 동 사업 로봇 및 로봇부품 공급가격 비교, 로봇 및 부품 제조사 공개 가능 범위의 가격 구성표 등

동일 로봇 또는 로봇부품(모델번호 기준, 커스터마이징 未적용 기준) 동일 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로봇 및 로봇부품을 여러 수요처에서 도입하는 경우 각 수요처별 로봇 및 로봇부품 도입 대수 차이를 고려하여 수요처별 다른 가격을 책정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동일 제품의 타 수요처 납품실적 및 납품가격 제시 필요).

\* (예) 1대 도입 가격이 MAX, 30대 도입시 1대 도입가격 보다 낮은 가격 인정

**Q2-8. 사업비로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A2-8. 인건비 편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2-9. 사업 수행 시, 용역이 가능한가요?**

A2-9. 불가능합니다.

**Q2-10. 사업 수행 시, 고가의 장비 구매가 가능한가요?**

A2-10. 사업특성상 장비 구매는 불가합니다.

**Q2-11. 과제에서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A2-11. 불가능합니다.

동 사업은 非 R&D 사업으로, 기술개발(R&D) 성격의 사업비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요처 요구사항과 테스트베드 검증 목적 등에 맞춘 부품 및 부분품의 개량 등은 인정됩니다.

**Q2-12. 참여기관도 사업비 민간 매칭이 가능한가요?**

A2-12. 별도 제한이 없으나, 반드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부담금을 합하여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매칭하셔야 합니다.

**Q2-13. 사업비 정산은 주관기관만 하나요?**

A2-13. 사업비 정산은 과제에 참여한 모든 수행기관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수수료는 주관기관에서만 산정하시면 됩니다.

\* 사업비 정산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진흥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

**Q2-14. 환수금 반납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2-14. 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 법인에서 위탁 정산이 완료되면 공문을 통해 환수금액 및 반납금과 지정계좌를 안내드리며, (총괄)주관기관에서는 납부기한 내 수행기관 총 반납금을 지정계좌로 일괄 반납하시면 됩니다.

**Q2-15. 정산 수수료, 이행보증보험 발급비용을 과제비에서 지급 가능한지?**

A2-15. 가능합니다.

**Q2-16. 사업수행 중 발생한 부가세 환급분의 사용이 가능한가요?**

A2-16.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기간 내 분기별로 해당 금액만큼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국고 환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Q2-17.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이자는 사용 가능한가요?**

A2-17. 과제 수행 중 발생한 이자는 사업비에 포함하여 직접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과제 종료 후 발생한 이자는 진흥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 국고환수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기타 Q&A**

**Q3-1. 사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A3-1. 진흥원 과제관리 담당자가 사업 진행상황 및 성과 전반을 관리하며, 모든 과제는 1개월 단위로 진행상황을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Q3-2.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 활용 기간 시 소요되는 운영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나요?**

A3-2.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소모품비, 운영비 등)은 주관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컨소시엄 內 협의를 통해 분담 가능 (사업계획서상 성과활용 계획에 반영)

\*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소모품비, 운영비 등은 소급 편성이 불가합니다.

**Q3-3. 사업기간 중 수요처의 로봇부품 및 테스트베드를 다른 곳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해도 되는가요?**

A3-3. 과제수행을 위해 제작된 로봇, 로봇부품, 테스트베드 등의 판매는 사업 결과물의 처분과 관계된 사항으로 불가능하며, 사업기간 중 수요처에서 로봇 및 로봇부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해야 합니다.(사업비 사용 불가)

**Q3-4. 사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로봇부품, 테스트베드 등)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A3-4. 사업결과물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 비율에 따라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제 수행기간(성과활용기간 포함) 발생한 사업결과물의 임의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소유권을 갖는 주체는 이를 자산으로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업이 종료되기 전(성과활용기간 포함)까지 손망실 등이 없도록 지속 관리해야 합니다.